범어역 "우방 유쉘"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주택과-19820호(2005. 12. 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41층 및 42층 1개동 총29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공급면적, 공급금액 및 분양대금 납부일정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1번지외 29필지

(단위 : ㎡, 원)

구분	청약 주택형	주택형 (m²)	세대별 계약면적(m²)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향별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대지가격	건축가격 (부가세포함)	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계약시	2006.01.26	2006.06.12	2006.12.11	2007.06.11	2007.12.10	2008.06.10	2008.12.10	입주 지정일
민영주택	42형	141.09	115.3747	25.7191	141.0938	55.2122	196.3060	23.2286	73	남향	6층	2	163,118,600	284,222,400	447,341,000	44,734,100	44,734,100	44,734,100	44,734,100	44,734,100	44,734,100	44,734,100	44,734,100	89,468,200
											7~10층	8	165,003,000	287,507,000	452,510,000	45,251,000	45,251,000	45,251,000	45,251,000	45,251,000	45,251,000	45,251,000	45,251,000	90,502,000
											11~20층	20	170,239,600	296,630,400	466,870,000	46,687,000	46,687,000	46,687,000	46,687,000	46,687,000	46,687,000	46,687,000	46,687,000	93,374,000
											21~30층	20	173,786,700	302,811,300	476,598,000	47,659,800	47,659,800	47,659,800	47,659,800	47,659,800	47,659,800	47,659,800	47,659,800	95,319,600
											31~42층	23	175,565,000	305,910,000	481,475,000	48,147,500	48,147,500	48,147,500	48,147,500	48,147,500	48,147,500	48,147,500	48,147,500	96,295,000
									73	동향	6층	2	159,687,200	278,242,800	437,930,000	43,793,000	43,793,000	43,793,000	43,793,000	43,793,000	43,793,000	43,793,000	43,793,000	87,586,000
											7~10층	8	163,971,400	285,709,600	449,681,000	44,968,100	44,968,100	44,968,100	44,968,100	44,968,100	44,968,100	44,968,100	44,968,100	89,936,200
											11~20층	20	170,159,200	296,491,800	466,651,000	46,665,100	46,665,100	46,665,100	46,665,100	46,665,100	46,665,100	46,665,100	46,665,100	93,330,200
											21~30층	20	173,786,700	302,811,300	476,598,000	47,659,800	47,659,800	47,659,800	47,659,800	47,659,800	47,659,800	47,659,800	47,659,800	95,319,600
											31~42층	23	175,565,000	305,910,000	481,475,000	48,147,500	48,147,500	48,147,500	48,147,500	48,147,500	48,147,500	48,147,500	48,147,500	96,295,000
	44형	147.62	120.0349	27.5890	147.6239	57.4423	205.0662	24.2652	73	남동향	6층	2	170,359,600	296,839,400	467,199,000	46,719,900	46,719,900	46,719,900	46,719,900	46,719,900	46,719,900	46,719,900	46,719,900	93,439,800
											7~10층	8	180,037,500	313,703,500	493,741,000	49,374,100	49,374,100	49,374,100	49,374,100	49,374,100	49,374,100	49,374,100	49,374,100	98,748,200
											11~20층	20	181,942,700	317,023,300	498,966,000	49,896,600	49,896,600	49,896,600	49,896,600	49,896,600	49,896,600	49,896,600	49,896,600	99,793,200
											21~30층	20	183,847,900	320,343,100	504,191,000	50,419,100	50,419,100	50,419,100	50,419,100	50,419,100	50,419,100	50,419,100	50,419,100	100,838,200
											31~42층	23	185,753,200	323,661,800	509,415,000	50,941,500	50,941,500	50,941,500	50,941,500	50,941,500	50,941,500	50,941,500	50,941,500	101,883,000
	52형	173.29	141.5027	31.7875	173.2902	67.7157	241.0059	28.5179	73	남동향	6층	2	207,086,900	360,834,100	567,921,000	56,792,100	56,792,100	56,792,100	56,792,100	56,792,100	56,792,100	56,792,100	56,792,100	113,584,200
											7~10층	8	215,400,000	375,320,000	590,720,000	59,072,000	59,072,000	59,072,000	59,072,000	59,072,000	59,072,000	59,072,000	59,072,000	118,144,000
											11~20층	20	217,655,700	379,250,300	596,906,000	59,690,600	59,690,600	59,690,600	59,690,600	59,690,600	59,690,600	59,690,600	59,690,600	119,381,200
											21~30층	20	219,911,400	383,180,600	603,092,000	60,309,200	60,309,200	60,309,200	60,309,200	60,309,200	60,309,200	60,309,200	60,309,200	120,618,400
											31~42층	23	222,033,200	386,878,800	608,912,000	60,891,200	60,891,200	60,891,200	60,891,200	60,891,200	60,891,200	60,891,200	60,891,200	121,782,4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가 층별 구분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을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별도계약품목(옵션품목)의 금액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아파트 본 계약시 별도로 선택후 계약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편의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로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편의시설,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융자지원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 예정임. ▷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청약시 유의사항

▷ 당해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에 의해 투기과열지구(2003.10.2.지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년 이내에는 전매행위가 제한됨.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1순위자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2순위 청약가능)하며, 상기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인정 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세대주가 사망,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1순위(무주택 우선순위 포함) 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5. 12 .10.)현재 대구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동시청약을 받는 입주자모집공고분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대구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대구광역시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로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주택건설지역 해당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2) 청약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청약관련예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분양지역 기준)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85㎡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 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 2002.9.5이후 가입한 분중 세대주가 아닌 분	대구광역시	2005. 12. 15.(목)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접수시간 : 평일:09:30~16:30 ■1,2순위자는 청약예금 등 해당가입은행에서 민영주택공급신청서를 교부 받으신 후 신청하여야 함	2005. 12.17.(토) 오후 2시 장소 : 당사 견본주택
	2순위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자중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에 해당되는 분		2005. 12. 15.(목)		
	3순위	전 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005. 12. 16.(금)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기간 및 요건

▷ 평형변경조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경과 시마다 회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평형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2)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평형만 신청 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평형만 신청 가능)

■ 신청접수 방법

– 층별, 향별, 동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3일간 접수하되, 1, 2순위 해당자는 청약예금 실시지역내 해당 청약관련 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을 경유하여 순위 확인후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한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 등기부 등본상 등기 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민영주택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 (제1, · 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당사 견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순위 확인서 (제1,2순위에 한함) ◆ 청약예금, 부금통장 (1,2순위에 한함) ◆ 예금인장 (제1,2순위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 등본 등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 신청위임용)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신청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 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신청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주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 청약자격 전산등록 내용을 변경하여야 함)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공동주택 전 주택형	신청금 납부 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가능한한 대구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금융기관기준 익영업일 (2005. 12. 19) 이후 (시간 : 10:00 ~ 16:30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인장 또는 본인, 신청인 본인명의 예금통장사본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청약신청금환불 위임용) 1통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대리신청자(제3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추가제출

▷ 제3순위 당첨자에 대한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오니 계약시 신청금을 제외한 금액만 준비하시기 바람.

▷ 제3순위 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낙첨자에 대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신청방법
민영주택	전평형 공통	◆신청자 입회하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각 순위별로 공개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고함.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견본주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당첨자 2005. 12. 22(목)~ 2005. 12. 26(월) (3일간, 09:30 ~ 16:30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6-401-230161 [예금주 : 대한토지신탁(주) 외 1인]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신청방법
공통	◆주택공급 신청접수증 (공동주택 경우에 한함)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계약금 (대구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호적등본1통(주택공급신청시 배우자 확인이 되지 않은 당첨자에 한함)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여부 등)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 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부)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1순위 당첨자 중 해당자)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외에는 모두 제3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본인 계약시의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6-401-230161	대한토지신탁(주)외 1인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우리은행 본?지점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타은행 및 타방법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분양대금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무효로 간주함

■ 계약조건 등

▷ 계약 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을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지정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대주택(임대기간 완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 자 제외)가 당첨된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을 경우에는 새로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됨.(단, 임대계약 만료가 분양주택의 입주시점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약 만료시점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 입주자 사전점검(건설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요령에 의거 점검에 의거 사전점검 이전일까지 개별통보 예정임)

▷ 입주예정일 약 1 ~ 2개월 전에 도배, 조경, 도장공사 등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

■ 입주 예정일 : 2009년 6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 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비실,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시설 1개소, 골프연습실 1개소) 등.

■ 유의사항

1.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당해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간 분양권전매가 제한되어 있음
2.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 등 (거주지역 등)청약자격이 변동 된 자는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 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4.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평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5.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6.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함
7. 분양일정 (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이상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이중 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함.
8.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함.
9.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10.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처리 함.
11.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2.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3. 아파트의 배치구조,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14. 각종 인쇄물과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15.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존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16.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17.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18. 주택공급신청서의「주택형」또는「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 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19. 이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시 내용 변조 등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시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20.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21.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22.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법정단위인 (㎡)로만 표시하였으니 신청 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환산법 : 형별 면적(㎡)×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23.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수함. 24. 본 아파트의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25. 본 아파트의 발코니 창호공사에 대한 비용(부가세포함)은 42형 – 금11,949,412원, 44형 – 금11,429,921원, 52형 – 금13,332,487원으로 해당금액은 분양가에 기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공사비용은 평형 및 발코니 위치 구분 없이 1㎡당 금500,000원을 기준으로 ±10%범위 내에서 공사범위,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됨.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았음

구분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서 번호 제 01282005-104-0010300호	금119,542,794,4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인 때,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인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말한다]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공정전에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2.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3.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보상금
14.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 약관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 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시행사 : 대한토지신탁(주) ■ 시공사 : (주)우방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리자	감리금액
건축	(주)예상종합건축사사무소	₩1,232,000,000
전기 · 정보통신	(주)한동엔지니어링	₩308,000,000
소방	(주)한동엔지니어링	₩55,000,000

■ 견본주택 위치 및 전화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1-3번지 ☎ 053)743-8787(代)

시공사 쎄븐마운틴그룹 우방 시행 및 분양 분양대금관리 고객의 믿음과 함께하는 – 대한토지신탁(주) 위탁사 (주)더욱더나은 건설

문의 : 053) 743-8787